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 마련 등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2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 마련	2
2. 이 법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8
※ 참고자료	1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개요	11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종류	12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세부추진 절차	13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단계별 소요 기간	14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6일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Ⅲ. 검토의견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이 법 상 담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사업시행자¹⁾가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 <신설> ① (생략)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1) 법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 -----.
---	--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²⁾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도 댐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하려는 목적³⁾을 지닌 특별법으로서,

이 법 상 댐[「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다목적댐, 생공용수댐, 홍수조절전용댐)]⁴⁾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수력발전댐)⁵⁾ 및 그 주변

2)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정의)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각목 생략> (※다음 페이지 표 참조)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역에서의 자연휴양림과 숲길 조성,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 또는 개발·정비사업을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함)으로 포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법 제2조제6호 각목)]

-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휴식공간 조성, 체육시설 설치),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등)⁶⁾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⁷⁾의 설치·운영
-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
- 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⁸⁾
-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승인(법 제4조·제5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고시(법 제7조), 인·허가 의제(법 제15조) 등 절차⁹⁾ 및 특례를 제공하며, 기반시설

5) **법 제2조(정의)**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6)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7)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8)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설치비용 보조(법 제21조), 부담금 감면(법 제22조)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2019. 6. 13)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한 사례는 현재('26년 2월 말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남¹⁰⁾.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의 운영 효율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 주도로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¹¹⁾.

구체적으로는 댐 주변지역에 친환경 관광·레저 시설이나 생태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이를 직접 운영하기에는 관광 마케팅이나 시설 관리 전문성이 부족하여 관리 부실이나 적자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익 창출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 경영이 필요함에도, 관련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9) 이 법 상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2. 참조

10) 특별법 제정 후 동 사업 실시 사례는 없으며 현재('26년 2월 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지자체(양구군, 안동시, 진안군) 대상으로 “댐 친환경 활용 계획(법 제4조)” 수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중임(~'27.3월)

11) 동 법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사업의 내용을 다른 법률(댐건설관리법 등)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제2조제6호)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의 위임·위탁·임대 등에 관한 근거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사업 운영은 지자체와 댐수탁관리자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수탁사업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해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운영 효율성을 위해 매각, 임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한 유사입법례¹²⁾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부진했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19조에는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12) 「관광진흥법」은 유사한 법체계적 관점에서 국가·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의 매각, 임대, 위탁 규정을 두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¹³⁾되어 있으므로,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처분 제한 대상에 해당하거나, 댐의 본래적 기능 수행을 위한 토지나 시설 등은 개정안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 경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법 제1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14) 개정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의견

제22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토지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위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현행법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부칙)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u>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 <u>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u> <u>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u>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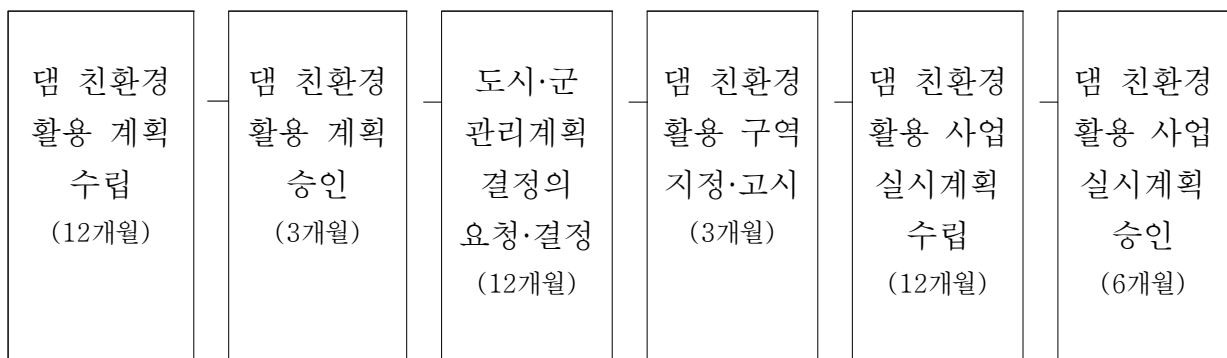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18. 6. 12, 법 제정 당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¹⁵⁾,

유효기간이 2년 미만 남은 현재('26년 2월 말 현재) 시점에서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한 사례가 아직 없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종전의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활용계획 승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활용구역 지정 등 사업 준비 및 시행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추진 절차 및 소요기간¹⁶⁾]



15)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17.12.28. 박덕흠의원 대표발의)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세부설명자료

16) 기후부에 따르면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차이 있으나 계략적으로 4~6년 소요(공사기간 포함).
참고자료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단계별 소요 기간 참조

다만, 동 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당시의 입법 취지와 상수원 보호 등 기존 환경정책과의 상충 가능성, 댐 친환경 활용사업 시설의 입지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정책 환경에 따라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⁷⁾¹⁸⁾.

문 의 처
02)6788-5547

17) 제21대 국회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허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006호, 임기만료폐기)

18)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상수원 보호 등 환경보전방안을 검증하고 있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타 부처와 지자체 등 공감대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이 당초 입법 의도와 달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의 일몰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 개요¹⁹⁾

- **(근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주변친환경보전법)
- **(목적)** 댐 주변지역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도모(제1조)
- **(대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제2조3호)
 - * 최대 댐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댐 발전소 2km 이내
- **(사업내용)**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제2조제6호)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숲길의 조성 등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사업시행자)**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제4조제1항) * 한국수자원공사(댐건설관리법 제5조)
- **(추진절차)** 계획승인(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댐 친환경 활용구역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공사 시행 → 준공 및 유지관리
- **(추진현황)** 특별법 제정('18.6월) 후 실시사례 없음
- **(향후계획)** 댐 로컬브랜딩 MP 수립 중인 3개 지자체* 대상 “댐 친환경 활용 계획”(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4조)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 K-water에서 시행한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지자체 선정(양구군, 안동시, 진안군)

1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종류(법 제2조제6호 관련)²⁰⁾

목	사업 종류	사업 내용	사업 시행주체
가	댐 효용증진 사업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댐관리청, 댐수탁관리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공공시설사업 등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홍보 및 부대사업 등)	댐관리청, 댐수탁관리자,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 체험·교육시설 등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
	숲길의 조성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	숲길관리청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일부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발전사업자 등
마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	시장·군수·구청장, 공공법인, 민간개발자
바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세부추진 절차²¹⁾

추진절차 및 시행주체		주요 내용
계 획 승 인 및 지 구 지 정	친환경 활용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행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 • 사업계획 내용 - 댐 친환경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대상지역, 위치, 면적 - 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주인 등 의견 청취 ↓ 관계기관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기후부장관)	•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 시 아래 사업시행자로 간주 -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효용증진, 정비사업, 지원사업 시행자 -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행자
	친환경 활용구역 지정(고시) (기후부장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60일 이내) 및 통보
실 시 계 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시행자)	• 실시계획 내용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 검토 및 평가서류 등 •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시
	환경평가 협의	
시 행 단 계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기후부장관)	• 인·허가 의제 : 27개 법률
	공사시행 및 준공검사 (기후부장관)	• 국가보조 :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댐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과 간선도로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비용 • 기반시설 중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지역에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 •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하천점용료·사용료
	사업준공(공고) (기후부 장관)	• 공사완료의 공고
관 리 단 계	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 (사업시행자)	•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하며, 다음의 각용도로 사용가능 -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 그 밖에 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필요한 비용

2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4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단계별 소요기간²²⁾

구 분	주 체	(개략)소요기간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4조)	사업시행자	12개월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기후부)		
주민 의견 수렴 및 보완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기후부 장관	3개월
↓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5조)	기후부 장관	3개월
↓		
도시·군 관리계획 요청·결정(필요시)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5조)	(요청) 기후부 장관 (결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2개월
↓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고시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기후부 장관	3개월
↓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수립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9조)	사업시행자	12개월
↓		
환경영향평가(필요시)	사업시행자	12개월
↓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승인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10조)	유역(지방)환경청장	6개월
↓		
댐 친환경 활용 사업 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18개월
↓		
댐 친환경 활용 사업 공사완료 공고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18조)	기후부 장관	3개월
↓		
사업 시행	사업시행자	-

2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